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40호 2017. 11. 15.(수)

【조 례】

【규 칙】

- 제531호 공주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제532호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0

【훈 령】

【예 규】

【공 고】

- 제2017-1875호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3
- 제2017-1893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3,중로2-62)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40
- 제2017-1906호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1

【고 시】

- 제2017-184호 동지역(서부)하수관거 정비사업 인가 고시 50
- 제2017-18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57
- 제2017-186호 계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59
- 제2017-18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62
- 제2017-18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63
- 제2017-190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65
- 제2017-192호 김상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67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미디어담당관 ☎ 840-2052)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 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3회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2017. 11. 1.)에서
의결된 공주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
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7년 11월 15일

공주시 규칙 제531호

공주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주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장·통장”을 “이장·통장(이하
“이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이통장은 주민총회 (해당 마을의 이통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마을

규약 또는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선출한 사람을 읍장·면장·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의 규약 또는 관습적인 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리·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주민총회의 성립요건과 운영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주민총회에서 이통장이 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이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공고문을 해당 리·통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후보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제3조제4항 중 “제3항에 따라 이장·통장 임명을 받으려는”을 “이통장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으로 “소개서를 읍장·면장·동장에게”를 “소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심의회”를 “이장·통장선정심의회”로, “총점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최고 점수”를 “최고점수”로, “읍장·면장·동장에게 추천한다”를 “선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읍장·면장·동장”을 “읍면동장”으로, “추천을 받아”를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에 따라 이장·통장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와 제3조제6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장·통장을 선정·추천하기”를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로, “둔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5항에 따른 이통장 후보자에 관한 심의
2. 제3조제6항에 따른 이통장 적격자 심의
3. 제6조 해임에 관한 심의

제4조제2항 중 “읍장·면장·동장”을 각각 “읍면동장”으로,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성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회는 제1항의 기능을 마친 경우에는 자동으로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 제목 “(임기)”를 “(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장·통장”을 “이통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장·통장”을 “이통장”으로, “경우 이장·통장”을 “이통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읍면동장은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통장의 임기 만료 전에 주민총회를 통하여 이통장이 선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읍장·면장·동장”을 “읍면동장”으로, “이장·통장선정심의회”를 “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또는 실제 전출”을 “전출 또는 실제 거주지 이동을 말한다”로 한다.

제7조 본문과 단서 중 “이장·통장”을 각각 “이통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장·통장”을 “이통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읍장·면장·동장은 이장·통장”을 “읍면동장은 이통장”으로, “발 생”을 “발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통장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세부기준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읍면동에 세부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세부기준으로 본다.

제4조(주민총회의 적용례) 제3조제1항의 주민총회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열리는 주민총회부터 적용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자격) ① <u>이장·통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u></p> <p>1.·2. (생략)</p> <p>② (생략)</p>	<p>제2조(자격) ① <u>이장·통장(이하 “이통장”이라 한다)</u>----- -----.</p> <p>1.·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임명)① <u>읍장·면장·동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절차를 거친 사람을 이장·통장으로 임명한다.</u></p> <p>1. <u>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u></p> <p>2. <u>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u></p> <p>3. <u>공개모집에 의해 이장·통장 선정심의회에서 선정·추천된 사람</u></p> <p>② <u>제1항제3호의 공개모집은 마을 총회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 읍장·면장·동장이 사실 확인을 거쳐 결정한다.</u></p> <p>③ <u>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하는</u></p>	<p>제3조(임명) ① <u>이통장은 주민총회 (해당 마을의 이통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마을 규약 또는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선출한 사람을 읍장·면장·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u></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의 규약 또는 관습적인 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리·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주민총회의 성립요건과 운영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③ <u>읍면동장은 제1항의 주민총회</u></p>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공고문을 읍·면·동 홈페이지와 해당 리·통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장·통장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추천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자기소개서를 읍장·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에서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심의하여 총점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읍장·면장·동장에게 추천한다.

⑥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은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이장·통장 선정심의회에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이장·통장선정심의회) ① 제

에서 이통장이 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이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공고문을 해당 리·통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후보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④ 이통장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소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

⑤ 이장·통장선정심의회-----
----- 최고 점수-----
----- 선정한다.

⑥ -----
----- 읍면동장-----
----- 심의를 거쳐 -----
-----.

제4조(이장·통장선정심의회) ① 읍

3조제2항에 따라 이장·통장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와 제3조제6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장·통장을 선정·추천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해당 읍·면·동에 이장·통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장·면장·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장·면장·동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 자동으로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임기) ① 이장·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장·통장이 임기 만료 전에

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_____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제3조제5항에 따른 이통장 후보자에 관한 심의

2. 제3조제6항에 따라 이통장 적격자 심의

3. 제6조 해임에 관한 심의

② _____
읍면동장_____, _____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성별_____
읍면동장_____
_____.

③ 심의회는 제1항의 기능을 마친 경우에는 자동으로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임기 등) ① 이통장_____
_____.

② 이통장 _____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되는 경우 이장·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6조(해임) 읍장·면장·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장·통장선정심의회 의견을 들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임기 중 해당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 또는 실제 전출)하였을 때

6.·7. (생략)

제7조(임명장 교부) 이장·통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재임되는 이장·통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_____ 이통장-----.

③ 읍면동장은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통장의 임기 만료 전에 주민총회를 통하여 이통장이 선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해임) 읍면동장-----

_____ 심의회 -----

_____ -.

1. ~ 4. (현행과 같음)

5. _____

----- 전출 또는 실제 거주지 이동을 말한다-----

6.·7. (현행과 같음)

제7조(임명장 교부) 이통장-----

----- 이통장 -----

제8조(임무) 이장·통장은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
한 조례」 제2조의 업무를 수행
하되, 같은 조례 제2조제2항제4호
의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 증
진과 봉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말한다.

1. ~ 10. (생략)

제9조(보고) 읍장·면장·동장은 이
장·통장의 임명, 해임 등 변동 사
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5일 이내
에 공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8조(임무) 이통장-----

-----.

1. ~ 10. (현행과 같음)

제9조(보고) 읍면동장은 이통장---

발생-----
-----.

2017년도 제13회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2017. 11. 1.)에서 의결된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2017년 11월 15일

공주시 규칙 제532호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제2항 및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른 공주시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주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의 설립 허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 신청) ①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조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에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 ① 시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
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할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② 시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에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민법」 제3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설립허가의 취소) 시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법인해산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4. 사업내용:

5. 허가조건: 뒷면에 기재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장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사단법인 점검표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허가번호		설립허가일	
■ 법인사무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추진실태
I. 민법 제97조	1.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해태 여부		
	2.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여부		
	3.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여부		
	4. 파산신청 해태 등		
II. 목적사업의 이행	1. 정관 목적사업 실시 여부		
	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		
	3. 정관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		
III. 수익사업의 적정성	1. 과도한 입장료, 참가비 등 부과 여부		
	2. 법인 사업수행에 따른 과실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있는 지 여부		
IV. 위탁사업 운영	1. 위탁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		
	2. 회계의 부정, 부실 운영으로 감사, 민원 등으로부터 개선권고 등을 받았는 지 여부		
	3. 기타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 지 여부		
V. 임원 등	1. 임원·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		
	2. 이사회적 적법한 운영 여부		
VI. 사업계획의 이행 등	1. 설립허가시 및 매년도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2.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여부		
	3. 허위 분원 운영, 분원 등기 및 신고 해태 여부 등		
VII. 정관변경 등	1. 이사의 임면, 이사의 권한 제한 등 정관 변경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		
	2.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		

■ 재산변동 등 회계감사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비 고
I. 기본재산 확보 여부	1. 기본재산 확보 여부		
II. 기본재산 처분 여부	1.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 여부		
	2. 등가 이하의 다른 재산과의 교환 여부		
	3. 자의적인 담보 설정행위 여부		
	4. 법인 목적과 무관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연대채무 등 부담행위 여부		
	5. 기본재산의 성질을 변경한 보존·이용·개량행위 여부 등		
III. 법인재산의 분배	1. 대표자 등 임원에 대한 과도한 임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지급 여부		
	2. 법인 차량, 휴대전화, 사무실 등의 임의 사용 여부		

■ 기 타

I. 기타사항			
---------	--	--	--

이상의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공주시관광협의회

대표자(대리인)

(인)

▣ 건의사항

▣ 제도개선 건의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공주시 공고 제2017-1875호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11 월 15 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산림휴양마을 내 자생식물원과 사계절썰매장 등의 명칭을 정리하고 썰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 산림휴양마을의 시설별 운영시간과 숙박시설 성수기 기준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숙박객에게 목재문화체험장 사용료를 할인하고 썰매장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생식물원 명칭에 대한 정의.(안 제4조제4항)
- 사계절썰매장 명칭에 대한 정의.(안 제4조제5항)
- 숙박료 명칭에 대한 정의(안 제4조제6항)
- 휴양마을의 시설별 운영시간을 정함.(안 제5조제1항)
 1. 목재문화체험장 : 오전 9시~오후 6시
 2. 썰매장 : 1월~2월·7월~8월·주말(토, 일)·공휴일(설날, 추석 제외)
 3. 숲속의 집·산림문화휴양관·야영장 : 입실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
- 숙박료 및 사용료 징수를 정함.(안 제7조제2항, 제3항, 제4항)
-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항)
- 휴양마을 시설물에 대한 사용제한을 정함.(안 제11조제2항)
- 숙박료 및 사용료 환급에 대한 내용을 정함.(안 제14조제2항)
- 고마샘터 힐링방 사용료 일부 통합하고 숙박객은 할인.
(안 별표1)

구 분		내 용	금 액	비 고
고마샘터 힐링방	일 반	성 인	5,000	1인/1일 기준
		청소년 어린이	3,000	
	숙박객	성인	4,000	
		청소년 어린이	2,000	

○ 사용료 중에서 사계절썰매장 요금을 신설.(안 별표1)

구 분		내 용	금 액	비 고
사계절 썰매장	일 반	성 인	5,000	1인/1일 기준
		청소년	4,000	
		어린이	3,000	

○ 성수기 기간을 현실에 맞게 변경.(안 별표2)

당 초	변 경
7월 1일 ~ 8월 31일	7월 16일 ~ 8월 15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산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산림과 산림휴양팀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 화 : 041-840-2573, FAX : 041-840-3733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란,”을 “이란”으로, “숙박실”을 “숙박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제2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생식물원”이란 향토 자생식물을 보존 및 육성하고, 생태문화 학습과 교육 체험을 위해 조성된 식물원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7호(중전의 제5호) 중 ““체험료””를 ““사용료””로, “체험프로그램 등”을 “체험프로그램(목재문화체험장, 썰매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계절썰매장(이하 ”썰매장“이라 한다)”이란 휴양마을 내에 썰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6. “숙박료”란 휴양마을 내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장 시설(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휴양마을의 시설별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문화체험장 : 오전 9시~오후 6시
2. 썰매장 : 1월~2월 · 7월~8월 · 주말(토, 일) · 공휴일(설날, 추석 제외)
3. 숲속의 집 · 산림문화휴양관 · 야영장 : 입실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

제5조제4항(중전의 제1항) 중 “운영”을 “원활한 운영”으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를 “인력과 예산을 지원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5항) 중 “운영방법”을 “시설 및 프로그램별로 운영방법”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이용료의 징수 등)”을 “(사용료의 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숙박료는 관리사무실에서 시설 숙박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마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숙박료를 징수 한다.

제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썰매장 사용료는 썰매장 매표소에서 시설 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 한다.

④ 체험프로그램 사용료는 관리사무실과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체

험권을 판매하고 징수한다.

제7조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이용료”를 “사용료”로 한다.

제8조의 제목“(이용료의 감면)”을“(사용료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2. 학술조사 등으로 공무수행에 시설과 체험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제2항 중 “시장은 제1항의 감면”을 “제2항의 면제”로 한다.

제9조의 제목“(이용 예약)”을“(사용 예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설물”을 “숙박시설”로, “1개월”을 “2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설사용료는”을 “숙박료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설사용료를”을 “숙박료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이용의 제한)”을“(사용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설별로 안전수칙 및 시설의 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한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시설사용료 환급)”을“(숙박료 및 사용료의 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예약취소”를 “숙박시설의 예약취소”로, “환급을”을 “숙박료 환급을”로, “시설사용료”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썰매장 및 체험프로그램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1.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날 물놀이 시설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2.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 행위) 썰매장은 시범 운영 기간을 둘 수 있고, 그 기간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 한다.

[별표 1]

사용료(제7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내 용	금 액	비 고
고마샘터 힐링방	일 반	성 인	5,000	1인/1회 기준
		청소년 어린이	3,000	
	숙박객	성 인	3,000	
		청소년 어린이	2,000	
사계절 썰매장	일 반	성 인	5,000	1인/1일 기준
		청소년	4,000	
		어린이	3,000	

※ 목공예 체험프로그램의 체험비는 재료비와 체험지도비가 포함된 실제 체험비로 프로그램 개시 30일 이전에 홈페이지와 체험장 안내판에 동시에 게시하여야 한다.

※ 참가인원의 과부족 등으로 인해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하고, 징수한 체험비(있는 경우)는 100%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2]

숙박료(제7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명)

시설명	규격	사용 기간	성수기 주 말 공휴일			비수기 주 중	비 고
			2시간 이하	4시간 이하	4 ~ 8시간		
숲속의 집	64.18m ² (10인실)	1동/1일	150,000			84,000	2실
	32.13m ² (6인실)	1동/1일	100,000			56,000	5실
산림문화 휴양관	43.00m ² (8인실)	1실/1일	120,000			70,000	2실
	30.40m ² (5인실)	1실/1일	80,000			42,000	2실
	21.50m ² (4인실)	1실/1일	60,000			35,000	2실
야영장	나무데크 시멘트	1면/1일	30,000			30,000	20개소
세미나실	62.00m ² (20명)	1실	2시간 이하	4시간 이하	4 ~ 8시간	1개소	
			50,000	100,000	150,000		

(주1)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 : 성수기란 7월 16일~8월 15일, 주말이란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준용

(주2) 비수기 및 주중(평일) :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과 그 전일(前日)을 제외한 기간

※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숙박시설) 이용자

- 기준인원 초과 1인당 5,000원을 징수하며, 초과인원은 2인 이하로 제한(침구류 추가제공 없음)

- 1일(14:00시 ~ 익일 11:00시)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 ※ 야영장
- 1일(14:00시 ~ 익일 11:00시)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 징수

[별표 3]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환급 및 배상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 위 사항은 예약 후 요금을 선납한 경우에 해당되며, 당일 취소는 12시까지 유선 또는 인터넷 취소 요청 등이 없을 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산림문화휴양관”이란, 휴양마을 관리사무실과 단체 <u>숙박실</u> 및 세미나실 등을 구비하고 있는 시설물과 그 <u>부속시설</u>을 말한다.</p> <p>2. (생략)</p> <p>3. (생략)</p> <p>4. “<u>시설사용료</u>”란 휴양마을 내에 있는 각종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u>요금</u>을 말한다.</p> <p><신설></p> <p>5. “<u>체험료</u>”란 휴양마을에서 운영하는 각종 <u>체험프로그램</u> 등에 참여하는 사람으로</p>	<p>제4조(정의) ----- ----- <u>뜻</u>은 ----- -----.</p> <p>1. -----<u>이란</u> ----- ----- <u>숙박</u> <u>시설</u> ----- ----- -----.</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2. (현행 제3호와 같음)</p> <p>4. “<u>자생식물원</u>”이란 향토 <u>자생식물</u>을 보존 및 <u>육성</u>하고, <u>생태문화 학습</u>과 <u>교육 체험</u>을 위해 <u>조성</u>된 <u>식물원</u>과 <u>그 부속시설</u>을 말한다.</p> <p>5. “<u>사계절썰매장(이하 ”썰매장“이라 한다)</u>”이란 휴양마을 내에 <u>썰매장</u>을 운영하기 위해 <u>설치</u>되어 있는 <u>시설</u> 및 <u>그 부속시설</u>을 말한다.</p> <p>7. “<u>사용료</u>”----- ----- <u>체험프로그램</u> <u>램(목재문화체험장, 썰매장</u></p>

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 설>

제5조(시설의 운영) <신 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휴양마을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이 필

등)-----

二:

6. “숙박료”란 휴양마을 내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장 시설(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시설의 운영) ① 휴양마을의 시설별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문화체험장 : 오전 9시~오후 6시

2. 썰매장 : 매년 1월~2월·7월~8월·주말(토,일)·공휴일(설날, 추석 제외)

3. 숲속의 집·산림문화휴양관·야영장 등 : 입실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

④ -----
----- 원활한 운영-----
---- 인력과 예산을 지원 하
여야 -----.

<삭 제>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양마을의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장 할 수 있다.

1. 3월 1일 부터 10월 마지막 날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 부터 다음해 2월 마지막날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③ (생 략)

④ 산림문화휴양관과 숲속의 집·야영장 시설의 1일 이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한다.

⑤ 시장은 휴양마을의 각종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시설 사용료, 체험료 등 (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시설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삭 제>

③ -----

----- 시설 및 프로그램별로 운영방법 -----.

제7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사용료를 징수한다. ---

-----.

② 숙박료는 관리사무실에서

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거나, 휴양마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1일 미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일 이용료를 적용한다.

<신 설>

③ 휴양마을의 이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와 같다.

<신 설>

제8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학술조사 등으로 휴양마을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거쳐 체험료와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시설 숙박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마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숙박료를 징수한다.

③ 썰매장 사용료는 썰매장 매표소에서 시설 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 한다.

⑤ ----- 사용료-----
-----.

④ 체험프로그램 사용료는 관리사무실과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체험권을 판매하고 징수한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2. 학술조사 등으로 공무수행에 시설과 체험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의 감면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자에게 해당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이용 예약) ① 휴양마을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1개월 전부터 휴양마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료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 ① (생략)

제11조(이용의 제한) (생략)

<신설>

② 제1항의 면제 -----

-----.

제9조(사용 예약) ① -----
숙박시설-----
----- 2개월 -----

-----.

② 숙박료는 -----

-----.

----- 숙박료를 -----
-----.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1조(사용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시설별로 안전수칙 및 시설의 이용의 불편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한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설사용료 환급) 시장은 예약취소 등으로 이용자가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신 설>

제14조(숙박료 및 사용료의 환급) ① -- 숙박시설의 예약취소 -- 숙박료 환급을 -----
----- 사용료-----
-----.

② 펼매장 및 체험프로그램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1.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날 물놀이 시설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2.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공주시 공고 제2017-189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3, 중로2-62)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공주시 고시 제2015-15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시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 의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3호, 중로2-62호)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한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15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3호, 중로2-62호)사업
- 위치 : 공주시 신관동 366-8번지 일원
- 면적 : 5,466㎡
-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8년 12월 31일

나.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 시행자 : (주)한국토지신탁 대표 김두석(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다. 열람장소 및 시간

- 장소 : 공주시 도시정책과
- 기간 : 2017. 11. 15. ~ 2017. 11. 29.(14일)
- 내용 :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

라.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

마. 의견제출방법

-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간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바.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도시정책과(☎041-840-85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내용이 조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내용과 상충되는 시행규칙의 불필요한 조항 및 중복조항 삭제
 - 제3조(편집팀원의 임무), 제4조(전문인의 복무), 제5조(전문인의 해촉), 제8조(실비보상)
- 나. 외부전문기관의 소식지 편집 권한 명시(안 제2조)
- 다. 시민명예기자 선발방법 변경(안 제3조2항)
- 라. ‘학생명예기자’ 삭제 ⇒ 시민명예기자로 일원화(안 제3조1항,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미디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미디어담당관실

주 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청) / 우편번호: 32552

전 화: 041-840-2052 / FAX: 041-840-2335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의 위탁) ①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소식지의 기획·조정
2.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취재·조사연구
3. 편집 디자인 제작
4. 게재내용의 검토·심사 및 배부관리(편집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그밖에 소식지에 발간에 필요한 업무

제3조(시민명예기자) ①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소식지의 취재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50명 이내의 시민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민명예기자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거나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민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명예기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시민명예기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민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시민명예기자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예기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학생(초중고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시민명예기자의 위촉해제) 시장은 시민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시민명예기자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밖의 사유로 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배부)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소식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1. 시민
2. 관내의 공공기관, 단체, 기업 및 출향인사
3. 그 밖에 소식을 수령을 원하는 자

② 소식지의 배부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배부하되, 직접 배부하는 경우에는 전문배송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직접 배부 위탁과 관련해서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시민명예기자의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민명예기자로 위촉된 사람으로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조례</u>」(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조례</u>」----- ----- -----.</p>
<p>제2조(편집 등) <u>편집팀 또는 위탁받은 사람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u></p> <p>1. ~ 4. (생략)</p> <p>5. 그밖에 소식지에 <u>필요한 사항</u></p>	<p>제2조(편집의 위탁) ① 「<u>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u>」(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발간에 필요한 업무</u></p>
<p>제3조(편집팀원의 임무) ①<u>편집팀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편집팀을 대표한다.</u></p> <p>②<u>편집주간은 편집팀장의 명을 받아 시정지 발행업무를 관장하고, 편집팀</u></p>	<p>제3조(시민명예기자) ①<u>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소식지의 취재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50명 이내의 시민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u></p> <p>② <u>시민명예기자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거</u></p>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③전문인은 시정지 발행에 필요한 기획·조정·자료수집·취재·조사 연구·심사·편집 및 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시민명예기자는 소식지발행 및 편집업무를 수행한다.

<신 설>

제4조 (전문인의 복무) ①전문인은 업무내외를 불문하고 전문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전문인은 위촉기간중은 물론 해촉된 후라도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전문인은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인의 해촉) 시장은 전문인이

나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민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명예기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시민명예기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민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시민명예기자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예기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학생(초중고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배부)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2월이상의 요양을 원할 때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르지 아니할 때
5. 그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6조(시민명예기자) ①시장은 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50인 이내의 시민명예기자와 학생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시민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천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시민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시장은 시민명예기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시민명예기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민명예기자증

따라 소식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1. 시민
2. 관내의 공공기관, 단체, 기업 및 출향인사
3. 그 밖에 소식지를 수령을 원하는 자

② 소식지의 배부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배부하되, 직접 배부하는 경우에는 전문배송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직접 배부 위탁과 관련해서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시민명예기자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예기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학생명예기자는 매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당 1명을 선발한다.

제7조(시민명예기자의 해촉) 시장은 시민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4. (생략)

제8조(실비보상)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과 시민명예기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배부 및 배부방법) ①소식지는 시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유관기관 및 단체, 고향을 떠난 인사, 그밖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②소식지의 배부는 우편 또는 직접

제4조(시민명예기자의 위촉해제) -----

-----.

1. ----- 스스로 사임하는 -----
2. ----- 3개월 -----

3. 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배부에 따른다. 직접 배부하는 경우
위탁할 수 있다.

동지역(서부) 하수관거 정비사업 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동지역(서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1. 15.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2. 목 적 : 본 과업은 공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상의 하수처리구역 내 사업으로써 합류식 지역인 공주시 동(서부)지역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에 대해 하수관로정비를 실시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방류수역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시행지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응진동 일원
- 사업면적 : 서부처리구역 면적 2.295km²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 시설의 종류·명칭 : 하수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시설
- 사 업 량 : 신설오수관(D90~D400) L=5.86km, 개량오수관(D300~D450) L=0.89km
맨홀펌프장 4개소, 배수설비정비 278가구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 처리구역 : 서부처리구역 면적 2.295km²

6.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번·지목·면적·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기타 관계서류는 공주시 수도과(041-840-8617)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1부. 끝.

(※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도로점용 편입용지집계표(영구)																	
	계	구	담	대	도	묘	임	장	잡	전	체	종	창	천	학	원	기타
총 계	필지	186	20	33	56	13	1	48	3	1	1				1	1	
	면적(m ²)	1,295.3	102.3	154.1	476.1	97.8	9.7	263.5	17.1	21.7	8.3						
국유지	건설교통부	필지 3	2						1								
		면적(m ²)	36	20.6						15.7							
	건설부	필지 15			15												
		면적(m ²)	178		178												
	농수산부	필지 7	7														
		면적(m ²)	91	91													
	문화체육관광부	필지 3	1	1	1												
		면적(m ²)	16	9	0	7											
	공주시	필지 72	10	5	27	6		1	20	3						1	
		면적(m ²)	563	106.7	25.3	256.9	30.2	9.7	117.2	17.1							8.3
계	필지	101	8	12	43	6	1	21	3	1	1				1	1	
	면적(m ²)	892	99.4	127.3	441.5	30.2	9.7	133.0	17.1							8.3	
사유지	공주군	필지 1			1												
	향교재단	면적(m ²)	2		2												
	충청남도향교재단	필지 2				1			1								
		면적(m ²)	9				8		1								
	개인	필지 82	2	8	27	12	6		26						1		
	면적(m ²)	393	2.9	26.8	118.9	59.7		129.8							21.7		
계	필지	85	2	8	27	7		27							1		
	면적(m ²)	403	2.9	26.8	118.9	67.6		130.5							21.7		

도로점용 편입용지집계표(임시)

		계	구	담	대	도	묘	임	장	잡	전	체	증	창	천	학	원	기타	
총 계	필지	166	10	20	33	56		13		1	48	3				1	1		
	면적(m ²)	7,325.8	624.0	640.2	1,042.1	2,396.6		630.7		55.1	1,466.8	136.3				166.4	167.5		
국유지	필지	3	2								1								
	면적(m ²)																		
	필지	15				15													
	면적(m ²)	1,013				1,013													
	필지	7	7																
	면적(m ²)	531	531																
	필지	3	1		1														
	면적(m ²)	116	74		8	35													
	필지	72	10	5	27			6		1	20	3					1		
	면적(m ²)	2,689		362.7	181.5	1,126.5		206.6		55.1	619.9	136.3					167.5		
계	필지	101	8	12	6	43		6		1	21	3				1			
	면적(m ²)	4,516	605.5	362.7	189.1	2,173.6		206.6		55.1	619.9	136.3				167.5			
시유지	필지	1				1													
	면적(m ²)	22				22													
	필지	2						1			1								
	면적(m ²)	39						36		4									
	필지	82	2	8	27	12		6			26					1			
계	면적(m ²)	2,748	18.5	277.5	853.1	200.7		388.6			843.0					166.4			
	필지	85	2	8	27	13		7			27					1			
계	면적(m ²)	2,810	18.5	277.5	853.1	223.0		424.1			846.9					166.4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 적(m ²)	편입면적(m ²)		소 유 자		비고
					영구점용	일시점용	주 소	성 명	
1	웅진동	688-2	전	476	1.33	9.29		공주시	
2	웅진동	669-7	전	1,130	4.41	30.90		공주시	
3	웅진동	669-12	전	112	0.62	4.36		공주시	
4	웅진동	664-23	임	3,001	14.67	124.84		공주시	
5	웅진동	664-22	임	479	4.23	29.62		공주시	
6	웅진동	664-3	전	596	3.99	27.92		공주시	
7	웅진동	664-17	전	482	6.27	43.86		국(건설부)	
8	웅진동	765-2	도	220	12.36	77.04		국(건설부)	
9	웅진동	662-7	전	35	1.39	9.72		공주시	
10	웅진동	661-7	전	1,071	30.00	138.42		공주시	
11	웅진동	739	구	47,718	33.15	184.25		국(농수산부)	
12	웅진동	659-18	전	355	8.66	50.69		공주시	
13	웅진동	658-1	답	832	18.65	111.62		공주시	
14	웅진동	657-1	대	253	4.33	32.25		공주시	
15	웅진동	228-2	전	93	1.44	10.11		공주시	
16	웅진동	228-1	임	111	1.63	11.43		공주시	
17	웅진동	227-1	대	949	14.61	101.54		공주시	
18	웅진동	226-20	전	108	2.07	10.34		공주시	
19	웅진동	226-23	전	1,179	20.96	130.98		공주시	
20	웅진동	224-3	답	929	26.61	115.75		공주시	
21	웅진동	739-3	구	128	1.59	4.78		국(농수산부)	
22	웅진동	242-6	도	4,642	91.16	225.72		공주시	
23	웅진동	664-33	대	214	0.60	4.35	웅진동 664-9	백마리아	
24	웅진동	664-31	도	13	0.85	5.92	봉정동 115	김종규	
25	웅진동	662	전	1,915	0.64	4.46	원주시 단계동 1086	윤영호	
26	웅진동	664-16	대	212	0.12	0.82		공주시	
27	웅진동	508-3	답	1,313	16.52			국(건설교통부)	
28	웅진동	223-5	답	4,238	1.76	8.7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21층	명진건설산업주식회사	
29	웅진동	270-13	구	267	1.09	8.39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133-9 대명빌라 비-201	김정수	
30	웅진동	756-6	도	641	10.03	84.41		국(건설부)	
31	웅진동	656-2	답	373	1.76	8.23		공주시	
32	웅진동	610-10	대	123	0.57	6.88		공주시	
33	웅진동	229-1	대	423	5.72	40.03		공주시	
34	웅진동	63	전	1,564	5.28	26.26	62	김재진	
35	웅진동	765	도	1,077	23.11	134.26		국(건설부)	
36	웅진동	665-3	대	963	0.42	3.57	대전 서구 둔산동 908-3 은초롱아파트 1307호	윤금선	
37	웅진동	664-28	대	868	3.30	19.82	664-8	이영규	
38	웅진동	664-37	대	26	0.70	4.21	664-8	이영규	
39	웅진동	664-36	대	2	0.13	0.80	664-8	이영규	
40	웅진동	664-2	대	514	3.25	19.49	산성동182	유택희	
41	웅진동	산33-6	임	5,168	4.56	27.3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93 114동 501호	황정하	
42	웅진동	666-1	대	367	2.89	17.36	637	정영덕	
43	웅진동	666	대	112	0.82	4.39	637	이무성	
44	웅진동	639-2	답	318	0.32	6.49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83-22	배숙자	
45	웅진동	638-5	전	2,212	0.95	10.65	전라북도 군산시 상나운1길 30, 101동 1402호	양영숙	
46	웅진동	637-5	대	1,764	22.74	47.15	천안시 구서동 422-4 현대APT 가-101	박달순	
47	웅진동	766	구	3,442	1.27	1.69		국(농수산부)	
48	웅진동	660-3	도	301	4.75	24.27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29-33 건우한마음아파트301	권혁란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 적(m ²)	편입면적(m ²)		소 유 자		비고
					영구점용	일시점용	주 소	성 명	
49	웅진동	662-3	전	1,861	9.28	54.62	659	오석진	
50	웅진동	662-8	전	57	1.27	4.60	227	황준익 외5인	
51	웅진동	659-5	전	251	4.90	59.06	221	오탈석	
52	웅진동	659-11	대	317	0.48	11.17	659-11	채춘자	
53	웅진동	659-12	전	3,650	4.83	52.23	계룡면 중장리 430-4	진영수 외5인	
54	웅진동	227-2	임	5,471	5.13	61.59	중동 147-143	김서연 외1인	
55	웅진동	659-4	답	491	0.85	10.20	충남 공주시 웅진동 659-8	황강욱	
56	웅진동	657	대	964	11.95	143.40	산성동180-10	황관익	
57	웅진동	산32-10	임	7,290	4.91	34.00	부천시 중구 심곡동 476-5	주식회사경일주택	
58	웅진동	226-24	도	61	2.84	19.73	봉황동 217	방재봉	
59	웅진동	226-27	도	65	3.46	24.71		공주시	
60	웅진동	227-8	도	122	6.41	44.92		공주시	
61	웅진동	227-4	도	83	3.91	27.34		공주시	
62	웅진동	산32-21	임	1,287	13.70	90.20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1 코아빌딩 4층	주식회사알앤엘바이오	
63	웅진동	223-6	답	197	4.81	23.30	천안시 신부동 770 백석빌딩 6층	명진건설산업주식회사	
64	웅진동	226-14	전	176	4.62	23.10	227	안종화	
65	웅진동	226-19	전	205	1.97	9.87		공주시	
66	웅진동	247-1	도	1,346	18.61			공주시	
67	웅진동	242-2	대	11,828	8.13	16.26	서울구로구 개봉동 170-33	배원건설주식회사	
68	웅진동	245-1	답	1,251	0.56	1.12	62	김재진	
69	웅진동	245-3	답	1,970	40.40	29.19		공주시	
70	웅진동	245-4	답	1,000	0.26	0.70		공주시	
71	웅진동	737-12	도	4,363	11.89	73.88		국(건설부)	
72	웅진동	252	대	2,715	5.65	43.45	산성동 133-1	김재천	
73	웅진동	252-2	답	402	3.06	18.27		공주시	
74	웅진동	736-10	도	237	0.44	2.63	반죽동 1	국(건설부)	
75	웅진동	270-15	답	94	1.66	12.66		공주시	
76	웅진동	279-3	답	62	1.37	9.75		공주시	
77	웅진동	277	확	22,566	21.70	166.42	반죽동 1	학교법인금성학원	
78	웅진동	282-2	답	1,112	1.07	8.22		서점기 외1인	
79	웅진동	76	전	3,457	22.45	153.3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83, 101동 701호	김옥순 외3인	
80	웅진동	65	전	3,991	8.66	43.28		공주시	
81	웅진동	736-23	도	79	1.46	7.34		국(건설부)	
82	웅진동	60-1	도	1,300	4.36	21.71		공주시	
83	웅진동	64-4	도	1,853	11.70	64.69		공주시	
84	웅진동	58-3	전	141	2.08	12.44		공주시	
85	웅진동	59	답	2,128	8.10	48.61		공주시	
86	웅진동	315-3	전	91	0.74	4.41		공주시	
87	웅진동	315-4	전	443	5.09	30.51		공주시	
88	웅진동	300-18	도	5,133	5.36	32.13		공주시	
89	교동	257-7	도	333	13.94	97.61		공주시	
90	교동	257-14	임	38	1.76	12.30		공주시	
91	교동	257-13	도	234	0.70	4.89		공주시	
92	웅진동	84-22	도	732	18.75	122.46		공주시	
93	웅진동	84-33	전	331	0.55	3.77	교동 224-5	김종순	
94	웅진동	89-6	도	128	4.56	30.56		공주시	
95	웅진동	84-16	도	116	4.96	32.19		공주시	
96	웅진동	89-2	도	86	3.86	25.85		공주시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 적(m2)	편입면적(m ²)		소 유 자		비고
					영구점용	일시점용	주 소	성 명	
97	웅진동	84-8	도	39	0.24	1.62		공주시	
98	웅진동	89-1	도	110	0.08	0.56		공주시	
99	웅진동	744	도	1,273	39.59	110.66		국(건설부)	
100	웅진동	150	전	1,654	0.74	4.46	중동 17-2	박종길 외1인	
101	웅진동	151-2	대	674	5.72	34.21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171-1	한남수	
102	웅진동	151-1	전	1,388	4.36	26.27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171-1	한남수	
103	웅진동	155	전	526	6.67	39.79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171-1	한남수	
104	웅진동	156-12	답	430	4.85	7.90		공주시	
105	웅진동	156-3	전	139	4.96	5.38		공주시	
106	웅진동	144-3	임	100	2.07	2.75		공주시	
107	웅진동	745	도	1,964	17.25	117.56		국(건설부)	
108	웅진동	160-1	도	48	0.77	6.46	124-1	이정순	
109	웅진동	132	전	1,197	21.13	101.28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 신반포3지구아파트 33-607	양경호	
110	웅진동	161-1	도	85	4.06	23.63	161	김용기	
111	웅진동	125-2	도	35	0.66	9.21	웅진동124-7	서인원	
112	웅진동	125-1	전	591	7.40	61.49	웅진동124-7	서인원	
113	웅진동	508	답	193	4.08			국(건설교통부)	
114	웅진동	124-2	도	348	10.34	48.90		공주시	
115	웅진동	738	도	893	0.46	3.00		국(건설부)	
116	웅진동	110-7	도	206	6.69	43.46	정안면 사현리 139	송상규	
117	웅진동	110-2	대	497	0.42	2.27	공주시 옥룡동 277-9	이화숙	
118	웅진동	110-3	도	74	0.36	1.97	94	이성욱	
119	웅진동	110-5	답	1,712	8.90	46.51	215-5	변광식	
120	웅진동	111-1	대	621	3.84	22.25	공주시 웅진동 111-1	안우영	
121	웅진동	110-1	도	147	5.55	13.50	정안면 사현리 139	송상규	
122	웅진동	215-9	도	33	0.05	2.44	215-5	김순자	
123	웅진동	215-10	전	386	5.13	6.41	215-5	김순자	
124	웅진동	215-4	대	767	1.09	6.00	천안시 신부동 372-65	전종기	
125	웅진동	104-3	전	294	0.64	3.96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6길 24,205호	김면	
126	웅진동	산23-1	임	57,718	7.95	35.57	대전시 선화동 32	충청남도 향교재단	
127	웅진동	104-1	전	246	1.62	9.19		공주시	
128	웅진동	104-2	대	140	1.86	11.65	공주시 웅진동 104-2	김제홍	
129	웅진동	104	대	199	4.73	28.39	104	김재영 외1인	
130	웅진동	741	도	426	0.85	5.27		국(건설부)	
131	웅진동	105	구	56	1.84	10.15	교동 137	곽순적	
132	웅진동	98	전	169	5.75	34.90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201-6	사단법인한국자유총연맹	
133	웅진동	285	전	1,088	1.27	15.62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5길 17,2동 503호	채은병	
134	웅진동	285-1	임	396	5.82	25.66		공주시	
135	웅진동	753	도	793	33.22	223.23		국(건설부)	
136	웅진동	300-5	체	52,331	7.62	52.49		공주시	
137	웅진동	739-8	구	1,673	11.71	80.98		국(농수산부)	
138	웅진동	289	전	165	4.11	29.62	공주시 금성동 96-6	이현길	
139	웅진동	290	전	1,330	3.97	25.58	291	이원성	
140	웅진동	290-1	전	151	4.22	8.00		공주시	
141	웅진동	293-1	체	180	4.87	38.17		공주시	
142	웅진동	293	체	564	4.59	45.67		공주시	
143	웅진동	296-2	전	1,362	7.31	53.85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 212-1	김광하	
144	웅진동	296-4	대	1,983	12.15	146.8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점발산로196번길 16-18(마두동)	박영지 외3인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 적(m ²)	편입면적(m ²)		소 유 자		비고
					영구점용	일시점용	주 소	성 명	
145	웅진동	431	원	24,895	8.27	167.52		공주시	
146	웅진동	300-43	도	106	0.40	8.53		공주시	
147	웅진동	298-2	도	614	5.56	78.61		공주시	
148	웅진동	300-28	도	142	3.52	29.21		공주시	
149	웅진동	300-44	도	515	5.66	32.18		공주시	
150	웅진동	300-41	도	109	1.71	8.32		공주시	
151	웅진동	736-16	도	2,192	2.54	14.22		국(건설부)	
152	웅진동	323-9	도	122	5.35	36.35		공주시	
153	웅진동	324-3	도	98	1.30	8.83		공주시	
154	웅진동	323-3	도	2,974	6.11	41.52		공주시	
155	웅진동	732-13	구	1,275	8.81	73.98		국(문화체육관광부)	
156	웅진동	734-2	도	1,900	6.54	34.52		국(문화체육관광부)	
157	웅진동	332-9	잡	11,547	9.72	55.08		공주시	
158	웅진동	354-3	대	793	0.43	7.54		국(문화체육관광부)	
159	웅진동	354-2	도	595	0.52	7.12	403	김봉기	
160	웅진동	359-2	도	215	1.55	22.30	교동211	공주군향교재단	
161	웅진동	734	도	308	7.22	38.25		국(건설부)	
162	웅진동	732-4	구	2,566	41.75	241.24		국(농수산부)	
163	웅진동	377-3	전	24	0.72	3.84	대전 동구 웅진동 136-6	재단법인충청남도향교재단	
164	웅진동	377-5	임	41	2.82	15.67	우성면 상서리 730	함평오씨대종계문중	
165	웅진동	산12-1	임	35,858	28.54	159.81	우성면 상서리 730	함평오씨대종계문중	
166	웅진동	750	도	552	2.43	11.55		국(건설부)	
167	웅진동	749	도	2,301	27.44	185.72		국(건설부)	
168	웅진동	397-12	대	221	4.67	32.96	339	백옥순	
169	웅진동	397-10	도	145	5.99	42.98	397-4	김부웅 외1인	
170	웅진동	397-8	대	1,015	9.81	80.24	교동 224-5	김종순	
171	웅진동	399-4	전	743	0.77	8.40	웅진동 30	이광치	
172	웅진동	397-2	전	506	1.41	14.26	웅진동 30	이광치	
173	웅진동	398	전	1,089	0.89	6.02	404	이용성	
174	웅진동	383	전	46	6.77	30.27		공주시	
175	웅진동	399-29	대	701	1.79	11.83	399	김종갑	
176	웅진동	399-32	대	659	5.26	34.21	480	정재을	
177	웅진동	399-36	대	98	0.19	1.25	교동 111-5	최수일	
178	웅진동	732-7	구	359	0.44	4.37		국(농수산부)	
179	웅진동	734-1	도	321	0.12	0.69		국(건설부)	
180	웅진동	508-1	도	66	12.55			공주시	
181	웅진동	509-3	전	469	15.74			국(건설교통부)	
182	웅진동	399-14	전	815	3.49	19.00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164-41	오병락	
183	웅진동	397-3	대	766	3.49	47.78	웅진동 16	최순자	
184	웅진동	405-1	대	1,244	2.86	57.84	405-1	복할수	
185	웅진동	407	답	3,558	8.54	172.88	대전 서구 월평동 300 무지개아파트 101동 1403호	황인선	
186	웅진동	732	구	1,331	0.70	14.19		국(농수산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하고 관계도서를 공주시 도시정책과(☎041-840-854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11. 15.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 공공청사 결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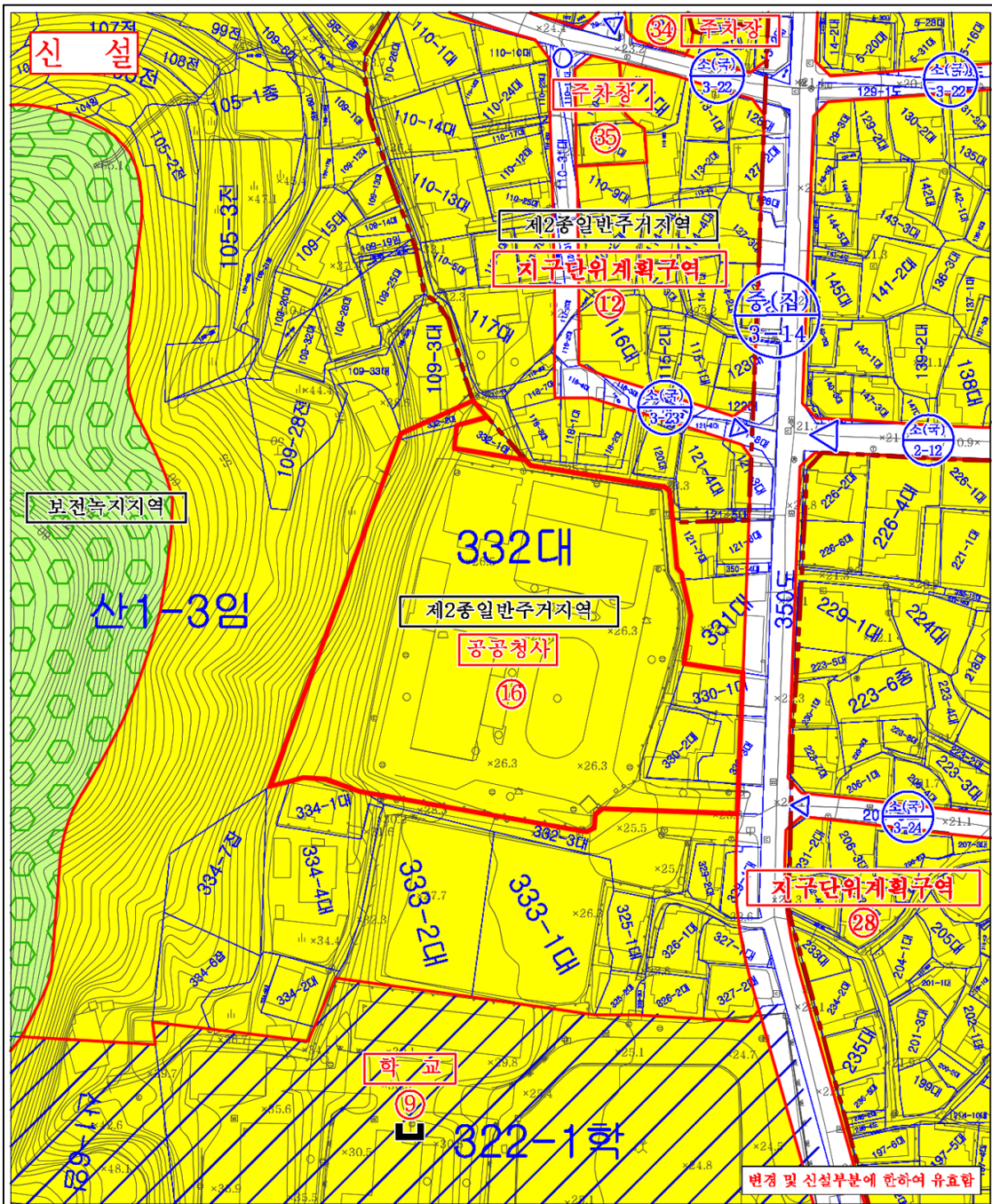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16	공공청사	공주세무서	반죽동 332대 일원	-	증)7,842	7,842	-	-

○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6	공공청사	신설 : 7,842㎡	◦ 공주세무서 이전을 위한 공공청사 신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주시청(도시정책과 840-8550)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고지도



범 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보전녹지지역	SCALE 1 : 500 N 0 10 20 40m
		지 적 선		도로(중로, 소로)	
		지구단위계획구역		학 교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타도시계획시설	

계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방재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34번지 일원 계실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2.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실시계획 공고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방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하고 관계도서를 공주시 안전관리과(☎041-840-8648)에 비치하였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06.

공 주 시 장

①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계실지구(침수위험)를 항구적으로 정비하여 침수, 유실, 고립, 붕괴 등의 복합적인 위험용인들로부터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일원

3. 면적 : 18,484㎡ (신설)

4. 시설의 종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에 의한 방재시설(하천)

②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조서

1. 방재시설

가. 하천

■ 하천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신설	①	하천	지방하천 (계실천)	계실리 587-10	계실리 248-1	계실3교 (면도)	594	18,484		

■ 하천 결정(신설)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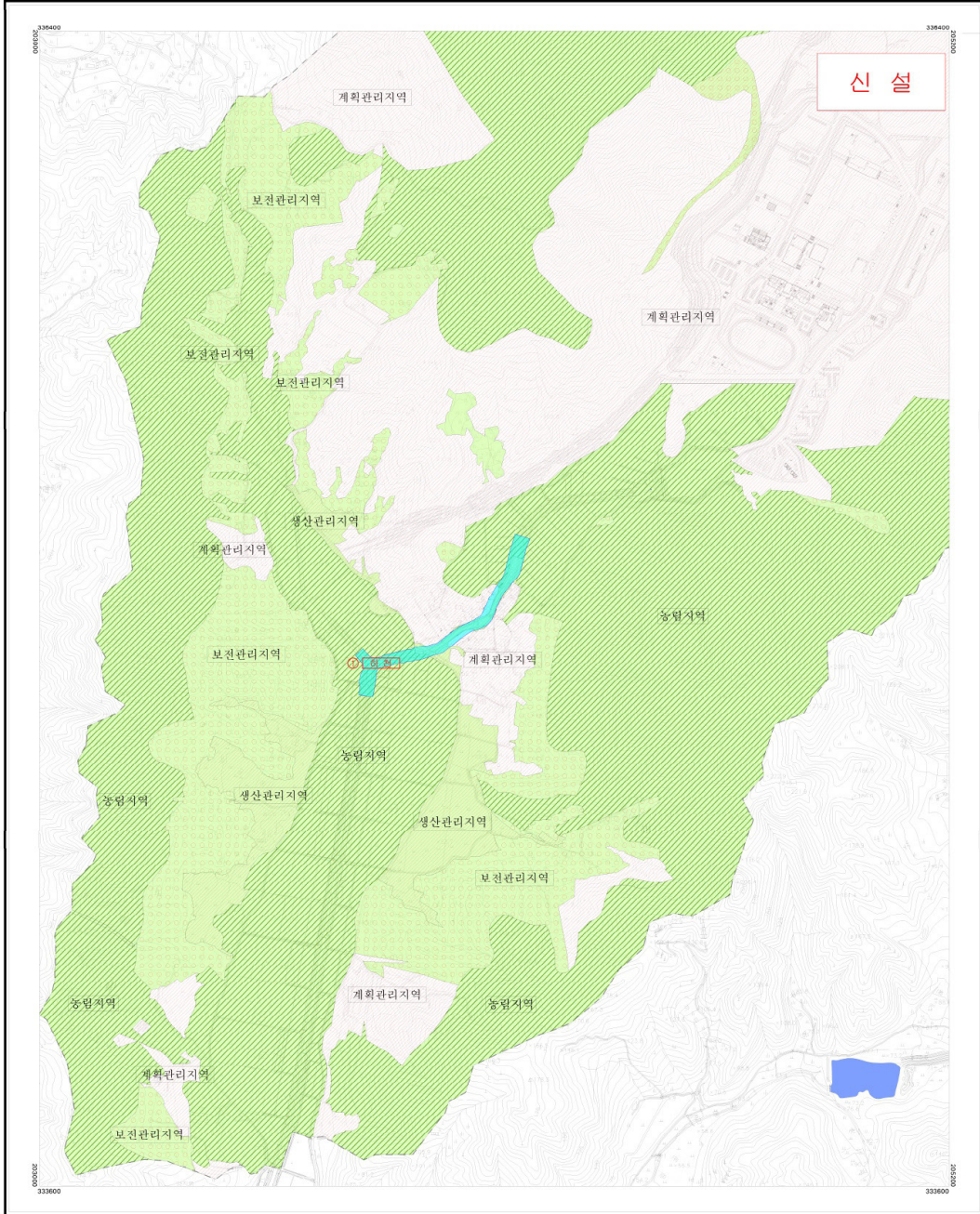
도면 표시 번호	하천명	내 용	사 유
①	지방하천 (계실천)	-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선 결정 (18,484㎡)	- 하천공사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S=1/1,500) :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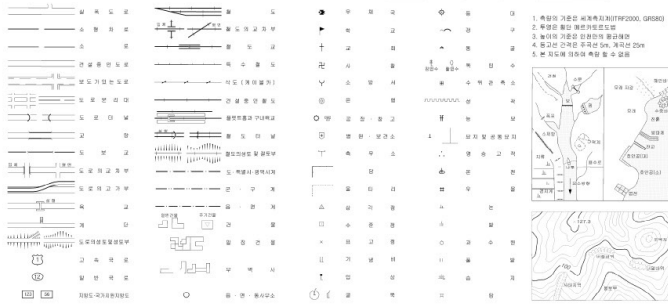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하천) 결정(변경)도 -계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Scale=1:5,000

도업번호 : 대지22



축척 1:5,000



구분	없던 면적		없었던 면적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3차 확인자
소속	(주)대원(주)대원	공주시 도시정책과	공주시 도시정책과	공주시 도시정책과
직위	상무	주무관	담당	과장
직급	수석정책관	시정주사	시정사무관	시정사무관
성명	김민혁	전영태	신종섭	신종섭
확인인				김태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공 주 시 장

1. 사업명 : 아이젠아파트(구 서광아미가아파트)
2. 사업위치 : 공주시 소학동 254-3번지
3. 사업주체
 - 상 호 : (주)큐피엠 대표 김홍렬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91번길 29 (청학동)
4. 용도지역 : 2종 일반주거지역
5. 사업규모
 - 대지면적 : 3,701.21㎡
 - 건축규모 : 주2/부3, 지하1/지상 12~15층, 65세대
 - 주택형별 : 58.3041㎡(24A형 1세대), 84.7875㎡(34A형 30세대),
84.7875㎡(34B형 10세대), 118.2745㎡(43A형 24세대)
 - 건축면적 : 757.3378㎡ - 연 면 적 : 9,591.8099㎡
 - 사업기간 : 2003. ~ 2018.06.30.
6.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명	서광아미가아파트	아이젠아파트	공사내용 변경없음
사업주체	(주)대보건설 대표 박남규, 임정미	(주)큐피엠 대표 김홍렬	
주 소	대전시 유성구 도안대로 553-2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91번길 29 (청학동)	
사업기간	2003.~2005.02.	2003. ~ 2018.06.30.	

7. 의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1. 10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시더리길 32 (주미동) 외 3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11.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 부여사유	공적장부 주소전환계획
1	충청남도 공주시 주미동 241-2	충청남도 공주시 시더리길 32 (주미동)	2017.11.10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오곡동 008-6	충청남도 공주시 고분터로 649 (오곡동)	2017.11.10	신축	20100112	발양 ~ 반송을 지나는 길의 고개 이름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3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486-1, 486-9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길 26-8 (월송동)	2017.11.10	신축	20100112	웅기정이라 있었던 마을이라 하여 생김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4	충청남도 공주시 신안동 673	충청남도 공주시 안죽2길 28-4 (신안동)	2017.11.10	신축	20100112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60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과로 236-43	2017.11.10	신축	20100112	행정구역 명칭과 도로특성 반영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150-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길 31-48	2017.11.10	신축	20100112	일련번호방식과 도로특성 반영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7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6-1, 7-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길 48-2	2017.11.10	신축	20100112	일련번호방식과 도로특성 반영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계리 232-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계연동길 168-16	2017.11.10	신축	20100112	구계리와 연동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9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계리 412-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막1길 21-37	2017.11.10	신축	2010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리리 488-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금수동길 52-38	2017.11.10	신축	20110630	문리가 50그 영의마을 명칭을 활용하여 문금수동이라 명칭을 변경하여 문금수동이라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문리리 57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죽안길 10	2017.11.10	신축	20100202	죽안마을이 죽안마을이 아닌 죽안마을이라 명칭을 변경하여 죽안마을이라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547-7, 547-8, 547-9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김바위로 533	2017.11.10	신축	20100112	주봉~이인 가늘길 도로 명칭과 김바위는 유적명이 있어 유림의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3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북동리 473-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구부내로 2-1 (북동리경노당)	2017.11.10	신축	20120104	너름이 구부내로 불린다 하여 구부내라 불렀던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4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791-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탄천신림면지길 34-74	2017.11.10	신축	20131023	탄천신림면이라던지 준공에 따른 도로명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5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가척리 612, 610-1, 611-2, 613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가척아계동길 73 (가척리경노당)	2017.11.10	신축	20100202	자연마을 명칭 활용,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도로 명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6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룡리 634-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용동길로 435-3	2017.11.10	신축	20100112	내룡리의 내룡명 용동과 구룡~용동의 용이고개를 관통하는 도로로 용동정역이라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룡리 431-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룡면이길 7	2017.11.10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룡리 345-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용정길 21	2017.11.10	신축	20100202	마을에 큰 정자나무가 있어 응정이라 불리는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용곡리 107-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수성1길 92-20	2017.11.10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2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용곡리 58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의송2길 36	2017.11.10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2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북동리 794-12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구모동길 87	2017.11.10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2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북동리 794-7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구모동길 89	2017.11.10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2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북동리 794-12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북동리 91	2017.11.10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2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154-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서당길 66 (두만리경노당)	2017.11.10	신축	20100112	도로 끝 지점에 서당이 있다하여 서당의 명칭을 활용하여 서당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2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고정리 27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고정길 251	2017.11.10	신축	20100112	고정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2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상리리 769-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가정자길 48	2017.11.10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2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도덕리 332-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말길 115	2017.11.10	신축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28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리 82-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길 38	2017.11.10	신축	20100112	귀산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귀산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29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곡리 93-1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동아침길 17-23	2017.11.10	신축	20100112	용동리와 아침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두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용동아침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30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262-5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상골길 28-16	2017.11.10	신축	20100112	마을 지형이 말의 등처럼 생겼다 하여 마상골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31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대흥리 203-2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대흥리길 178-16	2017.11.10	신축	20100112	행정구역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32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가곡리 29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도화동길 127-23	2017.11.10	신축	20100112	지리의 도화동은 조류이방에 도화동이라 함은 마을 북쪽이 나무가 많아서 도화동이라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33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활거리 272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다락골길 146	2017.11.10	신축	20100112	활거리 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해오담이라 또는 곳이다 하여 다락골이라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34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용수리 212-2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용수별길 135 (용수리경노당)	2017.11.10	신축	20100112	용수리와 별길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두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용수별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35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임동리 50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굴미안길 19	2017.11.10	신축	20100112	굴미안고도 부르는 데 굴미안고도라 지어라 마을이라 하여 굴미안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1. 10.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용골길 26-8 (월송동) 외 4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11.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1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486-4	충청남도 공주시 옹골길 26-8	2017.11.10	건물말소	
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431-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아랫난대이길 7	2017.11.10	건물말소	
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154-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서당길 66	2017.11.10	건물 신축에 의한 말소	
4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가척리 612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가척아랫말길 73	2017.11.10	건물 신축에 의한 말소	
5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북룡리 473-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구부내로 2-1	2017.11.10	건물 신축에 의한 말소	

검상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공주시 준공인가된 검상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공주시 기업경제과(041-840-829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공 주 시 장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검상 농공단지 조성사업 (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기 정	솔 브 레 인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로255번길 34(삼평동) ○ 시 행 자 : 대표 정지완
변 경	대성산업가스(주) (금회 사업시행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신도림동, 디큐브시티) ○ 시 행 자 : 김형태, 김신환

※ 사업시행면적 : 공주시 검상동 727-1번지 내 가스공급설비(68.0㎡)에 한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없음)

가. 목적 : 농공단지 개발

나. 개요

○ 개발방법 : 실수요자 개발(민간개발)

○ 주요업종 : C13 섬유제품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C17 종이제품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119 : 기타 발전업에 한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나. 면적

구	분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08,477.7	-	408,477.7	
기	준 공 단 지	298,533.0	-	298,533.0	
솔	브 레 인	85,151.9	감)68.0	85,083.9	
대	성 산 업 가 스 (주)	-	증)68.0	68.0	
아	세 아 산 업 개 발 (주)	13,561.8	-	13,561.8	
대	주 이 엔 티 (주)	11,231.0	-	11,231.0	

※ 사업시행면적 : 공주시 검상동 727-1번지 내 가스공급설비(68.0㎡)에 한함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07년 ~ 2015년 12월 31일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08,477.7	-	408,477.7	100.0	
공업지역	408,477.7	-	408,477.7	100.0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33,345.0	-	33,345.0	8.2	
준공업지역	375,132.7	-	375,132.7	91.8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

1) 교통시설 (변경없음)

가) 도로

○ 도로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중로	7	2,684	31,033.5	-	-	-	1	352	5,263.0	6	2,332	25,770.5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태	주요과지	최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8	15	국지도로	352	290-4답	중로3-1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6	12	집산도로	520	중로1-9	대주이엔티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7	12	국지도로	810	중로1-9	중로2-10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8	12	집산도로	300	중로1-9	중로3-1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19	12	집산도로	200	중로3-16	중로3-18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20	12	집산도로	180	상진산업	검상동 725-7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중로	3	21	12	보조간선도로	322	중로2-18	상진산업	일반도로	농공단지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결 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11	주차장	검상동 702-6번지 일원	2,039.8	-	2,039.8		

2) 공간시설계획 (변경 없음)

가)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 의 류	위 치	면 적(m ²)			최 결 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339.9	-	6,339.9		
기정	25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봉정동 563-3번지 일원	5,020.2	-	5,020.2		
기정	26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174번지 일원	820.9	-	820.9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	검상동 297-10번지 일원	498.8	-	498.8		

3)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가) 수도공급시설

○ 수도공급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 의 류	위 치	면 적(m ²)			최 결 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4	수도 공급 시설	배수지	검상동 725-2	2,132.9	-	2,132.9		

나) 가스공급시설

○ 가스공급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②-5	가스공급시설	검상동 727-1번지	-	68.0	68.0		

○ 가스공급시설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②-5	저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68.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압가스저장소 신설계획에 따라 저장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함 	

4) 방재시설계획 (변경 없음)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류	위 치	면 적(m ²)			최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3	수질오염방지시설	오·폐수처리장	검상동 726-3	9,124.0	-	9,124.0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최 결 정 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	검 상 농 지 공 단 지 구 단 위 계 획 구 역	공주시 검상동 · 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408,477.7		408,477.7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변경)

: 「6.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와 동일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없음)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위 치	획지 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331,554.2	-	331,554.2		331,554.2	-	331,554.2	
①	-	266,649.5	-	266,649.5	공주시 검상동 725-9번지 일원	266,649.5	-	266,649.5	
	2-1	52,163.8	-	52,163.8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299-1번지 일원	30,953.1	-	30,953.1	
	2-2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21,210.7	-	21,210.7	
	3-1	12,740.9	-	12,740.9	공주시 검상동 173번지 일원	12,740.9	-	12,740.9	

나) 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위 치	획지 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20,166.3		20,166.3	-	20,166.3	
③	1	20,166.3	공주시 검상동 산1-35번지 일원	20,166.3	-	20,166.3	

나) 공공시설용지

도 면 시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m ²)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19,383.8		19,383.8	-	19,383.8	
②	2	6,087.1	공주시 검상동 729-5번지	6,087.1	-	6,087.1	관리사무소
	3	9,124.0	공주시 검상동 726-3번지	9,124.0	-	9,124.0	오폐수처리장
	4	2,132.9	공주시 검상동 725-2번지	2,132.9	-	2,132.9	배수지
	11	2,039.8	공주시 검상동 702-6번지 일원	2,039.8	-	2,039.8	주차장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1	검상동 725-10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119 기타 발전업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①-2-1	검상동 298-3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분류 (코드번호)	업 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불허용도	○허용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3조)		
		용 적 율	○25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7조)		
높 이	○4층(20m)이하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①-2-2 ①-3-1	검상동·봉정동 738번지 일원	용 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분류 (코드번호)	업 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불허용도	○허용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율	○250% 이하	
		높 이	-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나) 지원시설용지 (변경)

(1)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③-1	검상동 산1-35번지 일원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4에 의한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율	○250%이하
		높 이	-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2)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③-1	검상동 산1-35번지 일원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4에 의한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률	○ 250%이하
		높 이	-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다) 공공시설용지 - 관리사무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②-2	검상동 729-5번지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4에 의한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소유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률	○ 250%이하
		높 이	-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 기타(공공공지) : 1m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처리계획 - 게재생략